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정108 특수재물손괴
피 고 인 허성무 (500000-00000000), 농0
주거 진00 000 0000 000-00 (000)
등록기준지 경0 000 000 000 000
검 사 홍00(기소), 김00, 라0(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00(국선)
판 결 선 고 2023. 1. 11.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공소사실의 요지

1. 2019.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경부터 2019. 12.경 사이 오후경 경0 000 000 000 000에 있는
피해자 한00(0, 00세) 소유의 토지에 심겨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00,000원
상당의 대나무 30그루를 위험한 물건인 톱을 이용하여 베어내 이를 손괴하였다.

2. 2021. 5.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26. 10:00경, 경0 000 000 000 000-0에 있는 피해자 한00(0, 00세) 소유의 토지에 심겨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대나무 5 그루를 위험한 물건인 톱을 이용하여 베어내 이를 손괴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이 베어낸 대나무들은 피고인 아들 소유의 토지 위에 있었던 점, 피해자가 위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인 아들 또는 그 이전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대나무들을 심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을 받음이 없이 그 토지에 나무를 심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그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2다15955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윤준석 _____